

이창한 / 5월 / 기초GS / 4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항 총점	석차	상위%	응시인원
563057	22.5	12.5	35	1	0.48%	208
563314	21	13.5	34.5	2	0.96%	
561288	21	12.5	33.5	3	1.44%	
561897	20	13	33	4	1.92%	
561137	21	11.5	32.5	5	2.40%	
561120	19.5	12.5	32	6	2.88%	
561402	20	12	32	6	2.88%	
563058	20	12	32	6	2.88%	
556282	19.5	12	31.5	9	4.33%	
561098	19	12.5	31.5	9	4.33%	
561298	19.5	12	31.5	9	4.33%	
561365	22	9.5	31.5	9	4.33%	
563508	22	9.5	31.5	9	4.33%	
559826	18.5	12.5	31	14	6.73%	
561293	18	13	31	14	6.73%	
561947	19	12	31	14	6.73%	
563331	18.5	12.5	31	14	6.73%	
556312	18.5	12	30.5	18	8.65%	
561105	18	12.5	30.5	18	8.65%	
561129	18.5	12	30.5	18	8.65%	
561886	20	10.5	30.5	18	8.65%	
563440	18	12.5	30.5	18	8.65%	
561132	18	12	30	23	11.06%	
561253	19.5	10.5	30	23	11.06%	
561903	18	12	30	23	11.06%	
561906	19	11	30	23	11.06%	
561912	18	12	30	23	11.06%	
561936	19	11	30	23	11.06%	
561938	18	12	30	23	11.06%	
563185	20	10	30	23	11.06%	
563299	18.5	11.5	30	23	11.06%	
562184	20	10	30	23	11.06%	
563359	18.5	11.5	30	23	11.06%	
556358	18	11.5	29.5	34	16.35%	
557152	19	10.5	29.5	34	16.35%	
561094	19.5	10	29.5	34	16.35%	
561148	18	11.5	29.5	34	16.35%	
561290	17.5	12	29.5	34	16.35%	
561910	18.5	11	29.5	34	16.35%	
561919	18.5	11	29.5	34	16.35%	
561939	18.5	11	29.5	34	16.35%	
561941	20.5	9	29.5	34	16.35%	

556205	18.5	10.5	29	43	20.67%
561234	19.5	9.5	29	43	20.67%
561271	18	11	29	43	20.67%
561349	20.5	8.5	29	43	20.67%
561900	19	10	29	43	20.67%
562263	18.5	10.5	29	43	20.67%
562590	17.5	11.5	29	43	20.67%
562759	18.5	10.5	29	43	20.67%
562623	18.5	10.5	29	43	20.67%
563252	21.5	7.5	29	43	20.67%
556383	19	9.5	28.5	53	25.48%
556412	20.5	8	28.5	53	25.48%
561235	18	10.5	28.5	53	25.48%
561898	17	11.5	28.5	53	25.48%
561914	18.5	10	28.5	53	25.48%
561943	18	10.5	28.5	53	25.48%
562009	16.5	12	28.5	53	25.48%
563268	19	9.5	28.5	53	25.48%
556232	18.5	10	28.5	53	25.48%
563494	18.5	10	28.5	53	25.48%
561121	18	10	28	63	30.29%
561902	16	12	28	63	30.29%
561937	16	12	28	63	30.29%
562164	18	10	28	63	30.29%
563401	17	11	28	63	30.29%
556214	17.5	10	27.5	68	32.69%
556399	19	8.5	27.5	68	32.69%
561118	17	10.5	27.5	68	32.69%
561169	17	10.5	27.5	68	32.69%
561258	16	11.5	27.5	68	32.69%
561270	19	8.5	27.5	68	32.69%
561360	17.5	10	27.5	68	32.69%
561894	16.5	11	27.5	68	32.69%
561899	18	9.5	27.5	68	32.69%
562262	18	9.5	27.5	68	32.69%
563426	16	11.5	27.5	68	32.69%
563605	19	8.5	27.5	68	32.69%
562288	16	11.5	27.5	68	32.69%
562390	16	11.5	27.5	68	32.69%
562938	18	9	27	82	39.42%
561090	17	10	27	82	39.42%
561214	16.5	10.5	27	82	39.42%
561256	16.5	10.5	27	82	39.42%
561259	20	7	27	82	39.42%
561889	16	11	27	82	39.42%

561911	15.5	11.5	27	82	39.42%
562692	17.5	9.5	27	82	39.42%
562449	20	7	27	82	39.42%
563165	15.5	11.5	27	82	39.42%
561283	17.5	9	26.5	92	44.23%
561904	19	7.5	26.5	92	44.23%
561955	16	10.5	26.5	92	44.23%
556298	14.5	11.5	26	95	45.67%
556376	18	8	26	95	45.67%
556434	16.5	9.5	26	95	45.67%
561218	19	7	26	95	45.67%
561276	14.5	11.5	26	95	45.67%
561307	18	8	26	95	45.67%
561373	17	9	26	95	45.67%
563064	17	9	26	95	45.67%
563311	16.5	9.5	26	95	45.67%
556479	19.5	6	25.5	104	50.00%
561229	14	11.5	25.5	104	50.00%
561289	21	4.5	25.5	104	50.00%
561891	16.5	9	25.5	104	50.00%
561929	16.5	9	25.5	104	50.00%
561950	17	8.5	25.5	104	50.00%
562161	14.5	11	25.5	104	50.00%
563558	16.5	9	25.5	104	50.00%
559611	18	7	25	112	53.85%
561278	15	10	25	112	53.85%
561930	16.5	8.5	25	112	53.85%
561942	17.5	7.5	25	112	53.85%
562349	13.5	11.5	25	112	53.85%
562284	17.5	7.5	25	112	53.85%
556236	16	8.5	24.5	118	56.73%
556382	17	7.5	24.5	118	56.73%
561171	17	7.5	24.5	118	56.73%
561173	17	7.5	24.5	118	56.73%
561217	16.5	8	24.5	118	56.73%
561915	12.5	12	24.5	118	56.73%
561960	19.5	5	24.5	118	56.73%
562993	15	9.5	24.5	118	56.73%
556272	15.5	8.5	24	126	60.58%
561149	19	5	24	126	60.58%
561154	14	10	24	126	60.58%
561419	18	6	24	126	60.58%
561944	15	9	24	126	60.58%
563486	14	10	24	126	60.58%
556360	16	7.5	23.5	132	63.46%

556409	12.5	11	23.5	132	63.46%
556809	18	5.5	23.5	132	63.46%
561175	17.5	6	23.5	132	63.46%
561287	17	6.5	23.5	132	63.46%
561431	16.5	7	23.5	132	63.46%
562503	17.5	6	23.5	132	63.46%
562211	16	7.5	23.5	132	63.46%
563420	18.5	5	23.5	132	63.46%
556203	14.5	8.5	23	141	67.79%
556305	13.5	9.5	23	141	67.79%
561264	13.5	9.5	23	141	67.79%
556448	12.5	10.5	23	141	67.79%
559560	16.5	6	22.5	145	69.71%
561163	15	7.5	22.5	145	69.71%
561908	13	9.5	22.5	145	69.71%
561931	14	8.5	22.5	145	69.71%
562233	18.6	3.5	22.1	149	71.63%
556499	15	7	22	150	72.12%
561170	15.5	6.5	22	150	72.12%
561285	13	9	22	150	72.12%
561887	12	9.5	21.5	153	73.56%
561238	13	8.5	21.5	153	73.56%
561905	14	7.5	21.5	153	73.56%
556500	15.5	6	21.5	153	73.56%
562889	11	10.5	21.5	153	73.56%
561888	17	4	21	158	75.96%
556213	12	9	21	158	75.96%
556411	21	0	21	158	75.96%
563358	13.5	7.5	21	158	75.96%
561097	14.5	6	20.5	162	77.88%
561165	12.5	8	20.5	162	77.88%
561885	15	5.5	20.5	162	77.88%
561896	12.5	8	20.5	162	77.88%
561918	18	2.5	20.5	162	77.88%
556416	13	7.5	20.5	162	77.88%
563448	20.5	0	20.5	162	77.88%
561284	12.5	7.5	20	169	81.25%
561913	14	6	20	169	81.25%
561281	18	1.5	19.5	171	82.21%
561317	15.5	4	19.5	171	82.21%
556397	9.5	9.5	19	173	83.17%
562852	8.5	10.5	19	173	83.17%
556311	18.5	0	18.5	175	84.13%
561203	17.5	1	18.5	175	84.13%
562975	13	5.5	18.5	175	84.13%

563727	11.5	7	18.5	175	84.13%
563300	17.5	1	18.5	175	84.13%
561103	12.5	5.5	18	180	86.54%
561893	13.5	4.5	18	180	86.54%
556373	17.5	0	17.5	182	87.50%
559375	15.5	2	17.5	182	87.50%
561294	12	5.5	17.5	182	87.50%
562854	11	6.5	17.5	182	87.50%
556408	9.5	7.5	17	186	89.42%
561935	10	7	17	186	89.42%
562289	12	5	17	186	89.42%
562207	13	3.5	16.5	189	90.87%
561302	12.5	3.5	16	190	91.35%
562840	15	0	15	191	91.83%
563179	9.5	5	14.5	192	92.31%
563382	9.5	5	14.5	192	92.31%
556483	10	3.5	13.5	194	93.27%
561113	13	0.5	13.5	194	93.27%
562251	10.5	3	13.5	194	93.27%
556301	9.5	3.5	13	197	94.71%
561945	3	10	13	197	94.71%
563482	12	1	13	197	94.71%
556430	10	2	12	200	96.15%
562191	5.5	6.5	12	200	96.15%
562783	6	5.5	11.5	202	97.12%
563560	9.5	1.5	11	203	97.60%
556443	8	2.5	10.5	204	98.08%
556377	8	1	9	205	98.56%
563074	6.5	2.5	9	205	98.56%
556219	7.5	0.5	8	207	99.52%
561134	7.5	0.5	8	207	99.52%

[문제-1]

1. 선출 시

1. 논쟁점

1.5 무전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당사자나 적법한 대리인이 추인하여 소의 유효가 되는데 (60조, 97조), 인복추인한 경우에도 추인이 유효한지 문제된다.

2. 인복추인 원칙

가) 의미

0.5 무전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 추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체는 대상으로 하여 하는 소송행위의 인복추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내용

1.5 소송행위는 연속적인 절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복만 선별해서 추인하면 절차안정을 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로, 상고제기반 추인하고 그 밖의 소송행위는 추인하지 않는다 등의 인복추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 예외

다만, 절차안정에 반하지 않으면 인복추인도 허용된다. 예로, 무전대리가 변인사에 위임해 승소한 후 상대방 항소는 소송이 2심이 계속 중, 소취하한



인권의 소송행위 중 소취하 행위만은 제외하는
 나머지 행위는 추인하는 것은 소송에 혼란을 가せる
 우려가 없으므로, 소송정지상으로도 적절해 민박추인이
 허용된다.

대 위한 시 유다

원칙적으

0.5 민박추인은 허용되지 않음인 원칙이 있다. 다만,
 절차안정을 해하지 않는 대만 유인도 될 것이다.

3. 선문의 해적

① 민박추인은 선적이 없음인 무효이다.

② 그 밖의 소송행위는 시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때 무효는 박정임인, 그 후에 추인해도
 선적이 없다.

③ 결국, 모든 행위가 무효는 처치이므로 변이사 시의
 상인은 무천대인이 행한 상인서 복적법 무효는
 처리해야 한다.

7/10

ㄷ 선문 대

1. 논쟁점

0.5 소 취하의 착은 취소를 인정해 상신성이
 불안판단문 한 것에 대해 상신성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정돈한다.

2. 손해배상 민법상 법률행위 규정 유추적용 거부 - 소위

(1) 문제지정

여론적 소송행위는 절차안정나 상대방 신의준수를
위해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절차공정적 소송행위인 손해배상 청구에 착안 있는 전의
원칙 취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대답

1) 민법 유추적용 부정설

통설은 절차안정론 위해 취하, 포기, 인낙, 양해에
착안, 사기, 강박이 있어도 민법 109조, 110조에
의해 취할 수 없다고 한다.

2) 민법 유추적용 긍정설

소수설은 절차공정적 소송행위는 절차안정나
무난하므로 민법상 의사표시 규정을 유추해 취할
수 있다고 한다.

대답

1) 민법 유추적용 부정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착안·사기·강박은 이유는 무법 또는 취하는
취할 수 없다고 한다.

2) 재심 규정 유추적용

다만, 소송행위가 사기·강박 등 형사상 처벌받을

1.5 다른 사안 행위는 이루어졌어도, 그에 대한
유치판정이 발생하면, 소송행위가 그에 부합되는
의사 없이 인형만 존재한 때에 한해, 451조 1항
5호, 2항 규정을 유추해 해석은 부인할 수 있다
한다.

예 정도

0.5 추이론 인정하면 절차안정론 해하의 민법상 추이론
작성한 재심사유 5호는 유추한 것이다. 다만,
유치판정은 오로지 451조 2항은 재심 내용은 막기
위한 것이므로 소송행위를 친위안 때까지 오로지
판정은 없는 것이다.

3. 상리성의 개념

1. 원칙적 반환·이송

상리성은 원칙적인 원상회복은 과기하는 사건은
원상회복에 반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436조 1항)

2. 예외적 반환

다만, 2 사안은 바탕의 재단하기 출원하거나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을 때
자판할 수 있다. (437조)



4. 신원의 해제

- 1.5 신 취하의 착오·취소는 인정한 원상회복에는
 위법이 없으므로, 상근성은 자판하여 적법으로
원상회복은 파기하인 소송중소선언 해야 된다.

8/10

2. 신원 21

1. 논쟁점

- 1 증명방해란, 그의 또는 자신의 상대방의 증명은
 방해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이다. 이는 당사자
 공평의 원칙 및 신의칙에 반하므로, 그에 대한
 제재가 있다.

2. 증명방해 요건

㉠ 일반적인 경우

- 1 증거행위는 그의나 자신의 부수하는 등 작위나
 부작위가 있고, 이는 인하여 증명방해 결과가 생길
 만았거나 부작위 만리 못했어도 2단 요건이
 충족하다

㉡ 사인

- 0.5 의사가 진회기록은 변조하는 작위가 있었으나,
 이는 인하여 증명방해 결과가 생길 충분히
 만았은 것이다.

3. 증명방해 은사

대 문제시점

0.5 법 349조, 350조 등에서 '상대방의 귀담을
진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해석과 관련하여 전해가 대법원이다.

대 약시

1) 다수설 - 자유성상설

증명방해는 변론의 진척하는 상아 방해의 은사와
정도, 증거의 가치, 다른 증거의 유무 등은 고려하여
방해자에게 얼마나 불리한 판단을 한지도 법원의
자유성상이 맡긴다.

리 소수설

① 증명책임상환설은 증명방해가 있으면 방해자에게
증명책임이 전환된다고 하여, ② 법성능설은
그 주장사실 자체가 배는 증명된 것이 본다.

대 취설

2.5 의사가 권속기록은 변조·가변한 사본에서, 법원은
이는 하나의 자력으로 하여 의사에게 불리한 평가를
한 수 있다. / 그러나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곧바로 증명된 것의 본
수 있다. / 하여, 자유성상설 입장이다.

대 정돈

0.5 증명책임권한설과 범상능기설은 방해행위의 태양나
정도는 고려하지 않은 입증 또는 진언의립다는
본으로, 방해자에게 너무 가혹하다. 따라서,
자위성능설이 타당하다.

4. 선원의 해석

법원은 진위기록이 변한 사실은 하나의 자출도
상아, 자위성능에 따라, 의사에게 불내한
0.5 평가인 내신이 있다면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인양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바른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7.5/10

[문제-2]

7. 선원 때

1. 논쟁거리

0.5 변하는 건치 없이 법원의 주장은 알 수 있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이 방해행위인 바, 공시송달이
적법 위헌한지 및 이에 대해 회복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2. 공시송달의 적법 위헌 여부 - 선구

대 공시송달 때

0.5) 당사자가 수신 등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도
 법원 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가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할 수 있다. (194조 1항)
 대 공시송달 요건

1) 송달장소를 알 수 있는 경우

0.5) 당사자의 수신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촉탁송달 개항에 따른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194조 1항)

2) 법인의 경우

① 송달받은 자의 송달장소

1.1) 법인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에게 해야 하며,
 대표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에서 한다.
 다만, 대표자에게 한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183조 1항)

② 송달장소 알 수 있는 경우의 의미

신상부호가 법인 주소지에 송달했거나 수취인
 불명의 송달 불능인 경우, 원칙으로 대표자가
 대표자의 주소지에 송달해줘야 한다.

대)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 소극

1) 법인 주소지에 송달불능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표자 주소지에 송달해준지 않은 약하는
 공시송달은 병한 것은 위법하다.

예 공시송달의 유한 여부 - 적부

공시송달 요건에 흠이 있어 공시송달 안 수
1.5 () 있었던 상행이나도 그 공시송달은 위법 유효하다.
공시송달은 재판상 명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3. 선원의 배판

따라서, 위 공시송달은 위법·유효하며, 공시송달

0.5 자체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

7/10

ㄷ. 선원 대

1. 논쟁거리

1.5 () 판선공본이 공시송달은 박공이되었으므로, 2 법원이
판선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사항은
경도한다.

2. 추후보안항소 거부 - 적부

ㄷ 의미

0.5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안이안야
불변기간은 지킨 수 없었던 점, 그 시기가
있어선 난복이 2주 내 계몽기 인 소송행위는
보안한 수 있다. (173조)

ㄷ 보전

1) 불변기간 도아

() 항소기간은 불변기간이며, 항소기간 도아는 불

0.5 | 단건은 약정되었다.

2. 책임질 수 있는 사유

1) 성급 처방부의 손상부분 등이 공시용달원 경우에는 공시용달 사실은 어느 데 다선이 없다.

2) 의 다인, 손상 능 비는 공시용달원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소송전행 사항은 조사한 이유가 있는 다선이 있다.

3. 전과

사유가 없었던 때부터 그 때 내 보아야 한다.

0.5 | 이는 단순히 판정사실은 안 때가 아닌 판정중단이 공시용달 병행된 용달원 사실은 안 때이다.

4. 사실

1) 불변기간 도과하였던, 성급 처방부의 공시용달 되었을 당사자에게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있다.

2) 따라서, 추안행소하면 적정하게 내기되기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야 피대상 (행 변은) 유착해 인용된 것이다.

3. 재생 기록 - 기록

4. 의미와 요건

0.5 | 재생은 약정된 때에 중대한 능이 있음은 이유로 하는 비상의 반복행위이다. 그 요건은 대상사건, 재생기간, 재생이익, 당사사건, 재생사유, 불행행위 반복한 많은 것이 인정된다.

Ch 사인

다는 의견은 모두 충족되었으며, 이 경우에도
적법하게 대변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
재심사유 3번은 무효에 인용된 것이다.

F. 선원의 개성

따라서, 2 범인은 추후본안항소와 개성은 동등
0.5 구제받을 수 있다.

5.5/10

